

#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 핸드북



**ORANGE COUNTY**  
**REGISTRAR OF VOTERS**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 핸드북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 규정, 또는 규칙의 힘과 효과는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법률 조언이 아니라는 이해 아래 배포되며, 따라서 본 핸드북은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의 출판 이후의 법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참관인의 책임입니다.

## 이념 및 사명

"오렌지 카운티 시민에게 선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의 신뢰성을 수호하며, 그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비전

"선거 행정의 우수성을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의 확신과 신뢰를 고취한다."



**REGISTRAR OF VOTERS**  
1300 South Grand Avenue, Bldg. C  
Santa Ana, California 92705  
(714) 567-7600  
FAX (714) 567-7556  
ocvote.gov

**BOB PAGE**  
Registrar of Voters

Mailing Address:  
P.O. Box 11298  
Santa Ana, California 92711

친애하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 참관인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선거 참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관리국장으로서, 저는 오렌지 카운티 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본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 핸드북은 선거 참관인으로서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포괄적 안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매뉴얼 전반에 걸쳐 여러분은 참관인을 관리하는 법률, 선거 및 투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참관인에게 공개된 기타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저희 웹사이트 [ocvote.gov/observe](http://ocvote.gov/observe) 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힘과 효과는 없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법률 조언이 아니라는 이해 아래 배포되며, 따라서 본 핸드북은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및 캘리포니아 정부법을 포함한 해당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도록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저희의 사명은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함께 균일하고 일관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Bob Page (밥 페이지)  
선거관리국장

# 목차

공개 참관 및 코로나-19	1-2
일반 참관인 가이드라인	3-6
참관인에게 허용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참관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참관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국 시설 운영	
미디어 구성원	
어떤 선거 활동이 참관 가능한가요?	
선거일 전 - 시작하기	7-13
투표용지 제작	
일반 투표 장비 준비 및 테스트	
우편투표(VBM) 투표용지 처리 절차	
무엇을 참관할 수 있나요?	
누가 참관할 수 있나요?	
무엇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수거되나요?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나요?	
투표센터 운영	14-15
운영 시간	
투표센터 개장	
투표센터 마감	
도로 인덱스	
투표권법과 캘리포니아 선거법 아래 언어 지원	
선거일 후 - 투표 개표하기	16-19
참관	
작업 공간 의무 사항	
단계	
최종 직전 공식 결과	
공식 개표 점검	
조건부 유권자등록/임시 투표용지	
조건부 유권자등록(CVR) 절차	
1% 수작업 집계	
위험 제한 감사	
부록 A: 투표 시스템 참고자료: 어휘 사전 및 보안 기능	21-28
부록 B: 법령 참고자료	29-52
부록 C: 유권자 권리장전	53-54

# 공개 참관 및 코로나-19

## 중앙 처리 절차 참관

선거관리국은 광범위한 참관을 허용하는 포괄적 해결안을 개발했습니다. 이 해결안은 카메라 및 대형 시청 화면, 근무 가능한 직원 및 물리적 참관 공간을 포함합니다. 의미 있는 참관 접근성 제공 외에도, 유권자, 선거관리국 직원 및 참관인의 안전과 투표용지 및 유권자 정보의 개인정보 및 보안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투표용지 처리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과 업무 요소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연한 참관 과정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해결안의 유연성의 한계는 실제 물리적 공간과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시청 화면을 설치할 공간이 한정적이며 카메라의 개수 역시 한정적입니다.

### 현장 참관

참관 가능한 중앙 처리 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논리 및 정확도 테스트
- 선거일 전, 중, 후 우편투표 처리 절차
- 선거일 밤 운영
- 선거 후 개표 점검
- 서명 확인
- 투표용지 복제
- 임시 투표 처리 절차
- 선거 후 감사

많은 참관 가능한 활동에는 화면이 설치되며 현장 참관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혼잡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에 따라 적어도 다섯 명의 일반인이 각 모니터에서 참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안전 예방 조치를 위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이 공간, 장비 제약 및 해당 안전 예방 조치를 고려해 1 회 당 최대 참관 인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 원격 참관

실시간중계가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며 일반인은 다양한 작업을 보기 위해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중계를 통해 제공된 지난

처리 절차와 화면의 일부는 점검 절차와 재검표 절차를 포함합니다. 원격 실시간중계는 개별 작업대, 유권자 정보, 또는 서명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앙 처리 절차를 원격으로 참관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선거일 28 일 전 오후 1 시부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 원격 참관 기회는 있지만 이의제기는 언제 어떤 이유로도 원격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건 및 안전 조치

아래 명시된 권리와 책임 외에도, 선거 참관인은 참관이 발생하는 카운티 내 장소에서 모든 보건 및 안전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선거 참관인은 참관 장소 도착 전 매일 자가 검진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통제 및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실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일 자가 검진을 실시할 때 다음의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십시오:

- 잦은 기침
- 발열
- 호흡 곤란
- 오한
-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선거 참관인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참관인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아픈 느낌
-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양성
-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임

# 일반 참관인 가이드라인

## 선거 참관인

선거 참관인은 투표 및 선거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투표센터, 투표용지 투입함,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관권은 투표 및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선거 과정을 참관하는 대중의 권리와 책임에 대응하며 선거 참관인의 허용 및 금지 행동 목록과 관련 선거법을 포함합니다.

### 참관인에게 허용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지정 구역에서 투표 및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참관.
- 개장 및 마감을 포함한 투표센터 일일 운영 참관.
- 분류, 서명 확인, 수거 및 반환 작업, 복제, 스캐닝 등의 우편 투표용지 처리 절차 확인.
- 임시 투표용지 처리 절차 확인.
- 투표 활동의 감사 및 기타 개표 점검 실시 중 참관.
-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투표 집계 참관.
- 모든 과정 참관 및 필기.
-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 투표센터 책임자 또는 선거관리국 사무실의 지정된 참관 홍보대사에게 직접 질문.
- 중앙 처리 장소의 지정 구역에서만, 선거법 조항 위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기타 휴대용 기기 등의 전자 기기 사용.
- 직원이 확립된 우편 투표용지 처리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

### 참관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 모든 선거 참관인은 투표센터에 입장할 때 투표센터 직원에게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참관하는 경우, 선거 참관인은 반드시 방문자 접수처에서 접수하고 일일 방문자 배지를 받아 시설 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선거 과정 참관 중 전문적이고 존중하는 태도 유지.
- 선거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 확립된 카운티 참관 규칙/규정 확인 및 준수.



## 참관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어떤 방식이든 선거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 투표 과정에서 사용 중인 기표소 또는 유권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 투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행위.
- 선거 관련 물품, 장비, 또는 선거 요원을 만지는 행위.
- 체크인 테이블에 앉거나 뒤에 서는 행위.
- 현재 처리 절차 진행 중인 투표센터 직원과 소통하는 행위.
- 투표센터 안에 있거나, 투표하는 줄에 서 있거나,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 또는 가두 투표 장소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100 피트 내에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 또는 투표 자격에 대해 대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투표센터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군집하는 행위.
- 선거 자료를 게시하거나 선거운동 배지, 단추 또는 의류를 착용하는 행위.
- 치안관, 사설 경호원 또는 안전 요원 제복을 착용하는 행위.
- 유권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증거 제시를 바탕으로 투표구 위원회만 가능합니다.
- 다른 참관인이 자료 또는 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 유권자 데이터 또는 투표용지 정보를 기록하거나 송출하는 등, 선거법 또는 선거관리국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중앙 처리 장소의 지정 구역 밖에서 전화/카메라를 사용하는 행위. (EC § 2302)
- 투표센터 내, 그리고/또는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에서 100 피트 내에서 휴대전화, 삐삐 또는 무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용지 셀카”를 찍는 것이 허용되며 참관인은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 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서명이 유권자 등록 기록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선거관리국 직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모든 선거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를 강요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위력, 폭력, 강압, 또는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 3년까지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C § 18540)
- 선거 및 개표 점검, 또는 투표하는 유권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3년까지 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C § 18502)

## 선거관리국 시설 운영

- 참관 구역에서 음식물 또는 음료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관인은 Santa Ana 선거관리국 사무실의 참관 구역에 입장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 검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참관인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된 작업과 처리 절차는 계속됩니다.
- 참관인은 투표구 위원이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관하는 절차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참관하는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련 물품, 장비, 또는 선거 요원 접촉 금지, 작업 중인 직원에게 직접 질문 금지.
- 단체 참관인의 경우 선거관리국장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감독관에게 해당 단체를 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 휴대전화, 태블릿 또는 전자기기는 진동 또는 꺼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앙 처리 장소의 지정 구역 외에는 통화 금지.
- 승인되지 않은 녹음기, 무전기, 또는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참관 구역 내에서는 침묵이 요구됩니다.
- 참관 중인 절차 이전 및 도중에 참관 홍보대사에게 조용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관 중인 절차에 참여하는 직원과는 직접 소통할 수 없습니다.
- 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정 절차 참관 홍보대사에게 서면 질문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참관 홍보대사에게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면 이의제기 양식을 제공합니다.
- 선거관리국은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구두로 적시에 대응할 것입니다. 이의제기가 작업 절차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이의제기는 중단됩니다.

## 미디어 구성원

기자, 카메라 팀 및 기타 미디어 구성원은 유권자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투표 절차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투표센터 및 선거관리국 사무실에서 허용합니다.

투표하는 유권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미디어에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에 기표 중인 유권자의 근접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행위.
- 촬영되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유권자가 미디어와 소통한 경우, 투표용지 투표함, 드라이브스루 제출 팀, 투표센터 직원, 또는

선거관리국 사무실의 선거관리국 직원에 우편 투표용지를 제출하는 유권자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 구역 - 투표센터 내, 투표센터 가두 투표 구역, 투표센터 드라이브스루 제출 구역,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 - 내에서 인터뷰하는 행위. 이 금지조항은 미디어를 초청하여 투표 장면을 촬영하는 후보자의 인터뷰를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제 2 편 제 20878(a)(8)항에 따라, 모든 인터뷰는 투표센터 입구 또는 외부 투표 장소로부터 최소 25 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투표센터에서의 미디어 참석은 선거관리국과 조율되어야 합니다. 투표센터 직원이 미디어에 선거관리국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미디어 문의, 또는 발언 혹은 인터뷰 요청은 (714) 567-5197 로 전화해 주십시오.

## 어떤 선거 활동이 참관 가능한가요?

### 선거일 전

- 우편 및 현장 투표용지의 중앙 집계 실시를 위한 투표 시스템의 준비 및 테스트.
- 투표구 물품 조합 및 배포.
- 우편투표 작업 (투표용지 반납, 서명 및 자격 확인; 투표용지 개표 준비;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복제; 투표용지 스캔;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문제 해결).
- 투표센터에서 수령한 임시 투표용지 처리 (해당하는 경우).

### 투표 기간 & 선거일 밤

- 투표센터 운영
- 투표 집계 및 보고

### 선거일 후

- 투표센터에서 수령한 임시 투표용지 처리
- 선거일 또는 그 이후에 수령한 우편 투표용지 처리
- 투표용지 복제
- 기명 투표용지 처리
- 선거 후 감사

# 선거일 전 - 시작하기

## 투표용지 제작

본 절차의 대중 참관을 환영합니다. 본 절차의 투명성을 관리하는 어떤 규정 또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단, 투표용지 제작은 후보자, 법안, 주 전역 발의안, 헌법 개정안, 그리고 투표용지에 오를 자격을 갖춘 발의안의 등록 마감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다음을 포함한 투표 자료의 양식을 정하고, 번역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1) 공식 투표용지; 그리고
- (2)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 투표용지는 어떻게 제작되나요?

### 투표용지 유형

투표용지 제작은 각 투표구의 특정 경선 조합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조합을 “투표용지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당 예비 선거에서는 각 정당 투표용지를 위한 추가 투표용지 유형이 필요합니다.

### 후보자 순서

-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는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바탕을 둔 공식과 해당 공직에 바탕을 둔 “순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 선거 82 일 전에 주 총무처(SOS)는 알파벳 글자의 공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합니다.
- 주 전역, 연방 의회, 카운티 전역 및 수퍼리어 법원 사법 후보자의 이름은 주 하원 선거구별로 순환합니다. 주 상원, 하원, 지방정부, 수퍼바이저 위원회 및 카운티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SOS 무작위 알파벳을 따르지만 순환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생성

- 각 투표구의 투표용지 유형 데이터는 Hart InterCivic (Hart) 투표 시스템의 BUILD 내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옵니다.
- BUILD 는 이 데이터를 투표용지 스타일 및 음성 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 생성된 스타일 데이터는 보안 vDrive 에 쓰여집니다.
- vDrive 는 투표용지 스타일 데이터의 복사본을 각 투표센터에서 사용하는 Hart 시스템의 Verity Print, TouchWriter 및 Scan 기기로

전달하고, 투표를 집계하는 시스템의 Count 어플리케이션으로 기표가 된 투표를 전달합니다.

## Verity Central

- Verity Central 은 종이 투표용지의 관내 스캔을 가능하게 합니다.
- 종이 투표용지의 데이터를 캡처하는데 사용됩니다; 투표용지는 디지털 방식으로 스캔, 이미지화,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해결되며, 투표들은 캡처되어 vDrive 에 저장됩니다.

## 일반 투표 장비 준비 및 테스트

각 자격을 갖춘 정당, 모든 선의의 시민 연합, 또는 미디어 조직이 참가할 수 있고, 집계 기기,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의 준비와 작업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최대 2 명의 대표자가 중앙 개표 장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대표자는 선거의 모든 단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직자는 각 선의의 시민 연합 또는 미디어 조직이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총 참석 대표자 인원을 최대 10 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5004

## 장비 테스트

- Verity Touch Writers, 프린터, 스캐너를 포함한 투표 장비의 모든 부분은 매 선거 전에 유지보수를 거칩니다.
- 장비는 전원이 켜지고 화면이 보이며 데이터가 올바르게 백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됩니다. 또한 모든 케이블이 적절하게 통신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되는 프린터에 종이를 끼우고 실험용 페이지를 인쇄합니다.
- Verity 스캔 기기에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각 선거 전에 재설치되고 주 총무처 사무실이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선거일 이후, 투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선거 기간 동안 수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증합니다.

## 논리 및 정확성 테스트 (L&A)

- L&A 테스트는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 시스템 및 투표 장비에 실시됩니다.
- L&A 는 선거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개별 장치이자 결합한 시스템으로서 같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확성은 결과가 알려진 실험용 투표용지를 기표하고 집계하여 테스트합니다. 알려진 결과와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고, 불일치의 원인을 해결하며 (해당하는 경우), 다시 테스트합니다.

- 실험용 투표용지는 모든 경선과 선택을 포괄하도록 개발된 사전 정의된 각본에 따라 선택되고 기표가 됩니다. 논리 테스트는 투표 집계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유권자의 선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요약하고 보고하도록 보장합니다.
- 테스트 전, 일반인을 테스트에 초청하는 테스트 일정 서면 공지를 미디어에 이메일 합니다. 이 정보는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도 게시됩니다.
- 테스트 투표가 완료된 후, vDrive 에 저장된 테스트 결과는 집계를 위해 Count 어플리케이션으로 읽습니다.
-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투표구별 보고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투표구 결과를 찾습니다. 해당 투표구의 투표 기록 및 투표 각본과 대조하여 잘못된 투표용지, 경선 및 옵션을 식별합니다.
-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테스트와 해결은 반복됩니다. 오직 불일치가 없는 투표 시스템 장비만 선거에 사용됩니다.
- L&A 테스트를 선거일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여 각 투표 시스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실험용 투표용지의 투표를 정확하게 집계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전 정의

- 사전 정의란, 창고 직원이 투표센터의 투표 장비에 수행하는, 장비가 투표센터에 전자식으로 할당된 (“정의된”) 절차입니다.
- vDrive 는 투표용지 유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편투표 (VBM) 투표용지 처리 절차

### 무엇을 참관할 수 있나요?

선거 전과 후, 참관인은 VBM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 절차와 VBM 투표용지 개표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다루는 개인이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참관하는 절차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다루는 등으로 질서 있는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 절차 또는 VBM 투표용지 개표 절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Elec. Code §15104(a), 15104(e)**

## 누가 참관할 수 있나요?

모든 카운티 대배심원 구성원과 공화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민주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올린 기타 정당 및 기타 이해관계 단체의 각 최소 1인의 구성원이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부터 투표용지 개표 및 처분까지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는 방식을 관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5104(b)**

## 무엇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유권자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직 투표구 위원회 위원만 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4240(b), 15105, 15109**

참관인은 VBM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다음을 포함하는 확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서명 확인;
- 훼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복제; 그리고
- 선거일에 집계되기 전, 조작 방지를 위한 VBM 투표용지의 보안.

**Elec. Code §15104(d)**

##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VBM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때 유권자가 참석하지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의 시점에 이의제기의 유효성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확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Elec. Code §15105, 15106**

- 이의제기는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양식이 제공됩니다.
-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적시에 구두로 제공됩니다.
- 선거관리국에 접수된 모든 이의제기는 기록에 추가됩니다. 선거에서의 이의제기 기록과 모든 이의제기 양식은 해당 선거를 위한 다른 자료와 함께 보관됩니다.

이의제기를 목적으로 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또는 전화/카메라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수거되나요?

2인 1조의 훈련된 직원이 매일 미국 우체국과 카운티 전역에 있는 120 개 이상의 OCROV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VBM 투표용지를 수거합니다.

- 엄격한 보관 관리 절차가 따릅니다.
- 투표용지 수거팀은 GPS로 추적되며 무전을 통해 파견팀과 지속적으로 통신합니다.
- 수거팀은 개봉하는 각 투표용지 투입함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 경로는 직원과 투표용지의 안전을 위해 매일 달라집니다.

## 어떻게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나요?

### 투표용지 수령

미국 우체국 및 OCROV 투표용지 투입함에서 수거되거나 유권자가 투표센터에 제출한 VBM 투표용지가 Santa Ana OCROV 사무실로 반송될 때 보관 관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 투표용지 수거 가방을 감사합니다.
- 보안 밀봉 장치 및 보관 관리 절차 문서를 확인합니다.
- 투표용지는 보안 구역에 미국 우체국, 투표용지 투입함 및 투표센터별로 따로 분리 및 정리됩니다.
- 보관 관리 절차 문서를 보관합니다.

### 투표용지 분류

- 밀봉된 채로 VBM 투표용지 봉투를 스캔하여 서명 확인을 위해 분류합니다.
- 서명을 유권자등록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봉투의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 분류기를 처음 통과하면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OC Ballot Express 알림이 전송됩니다.
- 서명을 확인하면 봉투는 투표구별로 분류하여 모아둡니다.
- 이의가 제기된 반환 투표용지는 추가 검토를 위해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 서명 확인

- 선거 29일 전부터 OCROV 직원은 반환된 VBM 봉투 처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OCROV 직원이 봉투 밖의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고 유권자 이력을 업데이트하여 현 선거에서 VBM 투표용지를 반환했다고 기록합니다.



- OCROV 직원이 유권자의 등록 진술서와 비교하여 서명을 확인합니다. 오직 선거 요원만이 이 비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lec. Code §3019  
CCR, Title 2, Div. 7, Chapter 8.3

## 투표용지를 꺼내어 개표 준비

- 선거일 29 일 전부터 OCROV 직원은 투표용지를 서명이 확인된 봉투에서 꺼내어 기계 판독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OCROV 직원은 선거일 밤 투표소가 마감될 때까지 개표에 접근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용지가 바코드가 있는 봉투로부터 분리되므로 유권자는 더 이상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다.
- VBM 부서에 배정된 OCROV 직원이 VBM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펴고 평평하게 하고 검사하여 투표구별 그룹으로 유지합니다.
- VBM 부서가 이니셜, 서명이 되어있거나 훼손되어 스캔하지 못하는 투표용지를 확인합니다.
- 훼손된 투표용지는 OCROV 직원에 의해 복제됩니다.
- 스캔 준비가 된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스캔 및 투표용지 분석을 위해 준비됩니다.
- 봉투는 모든 투표용지가 꺼내어졌는지 재확인됩니다.

Elec. Code §15101

## 투표용지 복제

원본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적절하게 기표가 되지 않은 경우, 투표 시스템으로 스캔하기 위해서는 복제되어야 합니다.

- 복제가 필요한 투표용지는 VBM 부서에서 수령합니다.
- 투표용지는 손이나 전자 투표용지 기표 기기로 복제하며 원본 투표용지의 선택을 그대로 기표합니다.
- 원본 투표용지는 “ORIGINAL”(원본) 라벨이 붙으며 복제 투표용지는 “DUPLICATE”(복제) 라벨이 붙습니다.
- 각 투표용지 세트는 번호를 붙여 기록합니다.
- 투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과 복제 투표용지를 비교합니다.
- 복제 투표용지는 스캔하도록 보내고 원본 투표용지는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투표용지 스캔

- 투표용지는 보안 투표용지 스캔실로 가져와서 처리됩니다.

- 투표용지는 약 100 장의 묶음으로 나누어 시스템에 스캔합니다.
- 묶음을 성공적으로 스캔하는 경우, 작업자는 이 묶음을 저장하고 스캔 묶음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 묶음을 성공적으로 스캔하지 못하는 경우, 묶음은 저장되지 못하고 다시 스캔됩니다.
- 묶음에 거부되는 투표용지가 있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묶음에서 제외하고 다시 스캔합니다.
- 스캔한 묶음은 전체 선거 및 개표 점검 기간 동안 보안 장소에 보관합니다.
- 개표 점검 기간 마지막에 묶음들을 밀봉된 상자에 넣어 저장하고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투표용지 해결

- 해결은 투표가 과소 투표, 과대 투표, 기명, 또는 훼손된 투표 대상 지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유권자 의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OCROV 직원은 오직 과소 투표에만 Verity Central “Auto Resolve” 자동 해결 기능을 사용합니다.
- 모든 해결 활동에서 OCROV 직원은 수용되어 기록될 때까지 투표용지 이미지를 검토하고 투표용지를 해결합니다. 직원은 캘리포니아 규정 제 2 편 제 20980 항에서 제 20985 항까지에 포함된 통일 투표 집계 기준을 따릅니다.
- 해결이 완료되면 선거일 오후 8 시 이후에 다른 투표 결과 집계에 더해지도록 기록이 저장됩니다.

## 투표용지 집계

VBM 투표용지가 검증되고 해결되고 기록된 이후에만 집계되고 개표 점검될 수 있습니다.

**Elec. Code §15109**

투표용지를 VBM 투표용지는 중앙식으로, 투표센터에서는 직접 스캔한 후, 투표용지를 vDrive 에 저장하여 집계를 위해 집계실로 가져갑니다.

- 투표 집계에 사용하는 기계는 각 선거 전에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로 다시 재이미지화 됩니다.
- 소프트웨어는 각 선거 전과 후에 검증하여 조작된 적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 집계 기계는 인터넷 또는 어떤 외부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집계실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으며 추가 단계의 물리적 보안 통제가 있습니다.

## 투표센터 운영

### 운영 시간

투표센터 직원은 예정된 투표센터 개장 시간 30 분 전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 선정된 투표센터:

선정된 투표센터는 선거일 10 일 전부터 선거 4 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운영합니다.

#### 모든 투표센터:

모든 투표센터는 선거일 3 일 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합니다.

선거일에는 모든 투표센터가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운영합니다.

투표센터 장소와 운영시간의 목록은 [ocvote.gov/votecenter](http://ocvote.gov/votecenter) 를 방문하십시오

## 투표센터 개장

투표소는 투표를 하는 첫 날에 개장합니다. 투표소 개장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투표센터는 첫 날 이후 선거일까지 매일 휴장하고 재개장 합니다.

개장 첫날에만 첫 유권자가 도착할 때 제로 보고서와 투표소 개장 보고서가 연결되어 하나의 긴 보고서로 잘립니다. 그 이후로는 투표소 보고서를 인쇄하고 잘라서 투표센터의 일일 봉투에 추가합니다.

## 투표센터 마감

오후 8 시에 투표소가 마감할 때 유권자가 줄에 서 있는 경우, 한 명의 투표센터 직원이 줄 끝에 서서 마감 시간 후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공손하게 투표소가 마감됐음을 설명합니다. 투표소 마감 전에 줄을 선 유권자는 투표가 허용됩니다.

투표소 마감 전에 도착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된 후, 투표센터 직원은 투표소 일시 중단 보고서를 인쇄하고 잘라서 일일 봉투에 추가합니다. 투표센터 직원은 종이 투표용지 개수와 투표용지 스캔 개수를 일치시킵니다; 불일치의 경우 선거관리국에 알려져 불일치를 조사합니다. 선거관리국 직원은 또한 세어졌거나, 버려졌거나, 취소됐거나, 식별 불가능한 기표, 과대 투표, 또는

기타 법률상의 이유로 무효가 된 투표용지 개수도 VBM 및 임시 투표용지를 포함한 기록된 투표 개수와 투표 개표 시스템으로 일치시킵니다.

선거일 밤에 투표센터 직원은 투표소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폐장합니다. 모든 투표용지는 매일 저녁 수거 센터로 반환됩니다.

## 도로 인덱스

도로 인덱스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전자 목록으로 어떤 유권자가 투표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도로 인덱스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4294(b)항에 의해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도로 인덱스는 기밀한 유권자등록 정보를 포함하므로 유권자등록 정보 신청서를 완료한 참관인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로 인덱스를 보려면 [ocvote.gov/streetindex](http://ocvote.gov/streetindex) 를 방문하여 웹사이트의 양식을 작성하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반납하십시오. 승인되면 온라인으로 도로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 투표권법과 캘리포니아 선거법에 따른 언어 지원

오렌지 카운티는 연방 투표권법 제 203 항에 의해 다음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와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중국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베트남어

오렌지 카운티는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베트남어로 번역된 투표용지를 제공합니다. 유권자가 유권자등록을 할 때 선호하는 제 203 항 언어를 표시하면 번역된 선거 자료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가 현장 투표를 선호하고 선호 언어의 투표용지를 원하는 경우, 투표센터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4201 항은 또한 주 총무처에서 결정한 다른 언어로 팩시밀리 투표용지(번역된 참조 투표용지라고도 알려짐)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선거일 후 - 투표 개표하기

### 참관

- 일반인 누구나 중앙 개표 장소에서 모든 절차를 참관할 수 있으나, 선거 공직자 또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그 목적으로 고용 및 지정한 1 인을 제외한 아무도 투표용지 용기를 만져서는 안 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를 운용 중인 구역의 출입은 선거 공직자가 허가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감사 중 종이 투표용지의 수작업 개표에서 검토 중인 투표용지 및 집계표는 참관인의 명확한 시야 내에 있어야 합니다.

Elec. Code §15204

### 작업 구역 의무 사항

- 참관인은 개표 점검 작업 중에만 투표용지 개표 점검 작업 구역에 입장할 수 있으며 일반 참관을 위한 지정 구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 개표 점검 작업 구역 내에서는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고, 전자 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참관인은 참관을 위한 화면에 제공되는 작업대의 정보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모든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선거관리국 사무실의 지정 참관 홍보대사에게 해야 합니다.
- 선거 참관인은 과정 중에 필기할 수 있지만 유권자의 개인 신원 또는 연락처 정보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국은 건물을 나가기 전에 참관인의 필기를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단계

개표 점검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모두 일반에 공개됩니다:

- 최종 직전 공식 결과;
- 공식 개표 점검;
- 1% 수작업 집계;
- 위험 제한 감사;
- 투표용지 밀봉 및 처분; 그리고
- 인증, 투표 진술서 및 선거 인증서.

Elec. Code §15302

## 최종 직전 공식 결과

- OCROV 직원은 선거일 밤 8 시 투표소 마감 직후부터 모든 투표센터가 처리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하여 모든 투표센터의 투표 및 선거일 전 수령한 개표 승인된 VBM 투표용지를 수거, 해결 및 집계합니다. 선거일 및 그 이후에 수령한 VBM 투표용지는 후속 결과 업데이트에 포함됩니다.
- 선거일 밤 8 시 5 분부터 OCROV 는 경선별 및 투표구별로 보고된 집계 결과를 대중과 주 총무처에 공개합니다. 투표 결과는 선거 공직자가 공식 개표 점검을 완료할 때까지 비공식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직전 공식 선거 결과 배포는 오후 8 시 5 분에 시작합니다. 투표센터 결과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오후 9 시 30 분 및 그 후 30 분마다 모든 투표센터가 보고될 때까지 업데이트됩니다.

Elec. Code §353.5, 15150-15213, 15320

## 공식 개표 점검

본 단계에서 OCROV 직원은 모든 발행하고, 투표하고,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감사하고 처리합니다. 본 단계는 다음 작업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반환한 모든 자료 및 물품 점검.
- 최종 직전 공식 개표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유효한 VBM 또는 임시 투표용지 처리 및 개표.
- 유효한 기명 투표 개표.
- 필요한 경우 훼손된 투표용지 복제.
- 필요에 따라 최종 결과를 위원회 및 주 총무처에 보고.

Elec. Code §15302

## 조건부 유권자등록/임시 투표용지

조건부 유권자등록(CVR)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캘리포니아의 기존 15 일 등록 기한을 연장하여 선거 14 일 전과 선거일에 임시로 등록 및 투표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는 유권자는 투표센터에서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센터를 떠나 나중에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는 CVR 을 사용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 CVR 절차

- 유권자는 선거 공직자의 입회 아래 유권자가 투표 자격이 있으며 투표하고자 하는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투표 후, 투표용지는 선거 공직자에게 반환되기 위해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밀봉됩니다.
- 그밖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의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자신의 배정된 투표구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습니다.
- 주 전역 유권자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유권자 이력 교환의 사용으로, 임시 투표용지는 투표 및 개표 점검 기간 언제라도 검토 및 검증되어 중복 투표를 방지합니다.
- 임시 투표용지는 VBM 투표용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검사, 검증 및 처리됩니다. 각 투표용지는 다음을 고려하여 개표 승인 전에 검토 및 조사됩니다: (1) 유효한 서명; (2) 현 카운티 유권자등록; (3) 전 카운티 유권자등록; (4) 현 등록 주소 대 새 주소; (5) VBM, 임시 또는 투표구 투표용지 반환 여부; 그리고 (6) 투표용지가 투표된 투표구.
- 임시 유권자가 투표 자격이 있는 경우, 선거 공직자는 투표할 수 있는 경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의 모든 경선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는 VBM 투표용지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경선의 일부에만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투표용지의 유효 부분을 새 종이 투표용지에 복제하고 그 복제된 투표용지를 VBM 투표용지처럼 처리합니다. 투표용지가 전자식으로 투표되었고 개표될 수 있다고 결정되면 해당 투표는 집계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만 집계될 수 있는 경우, 투표할 수 있는 경선만 집계됩니다.

Elec. Code §14310-14312

CCR Title 2, Div. 7, Chapter 1, Article 3.5, Sec. 20020

## 1% 수작업 집계

1% 수작업 집계는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인증 전에 수행되는 선거 후 감사입니다.

-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는 모든 선거의 공식 개표 점검 동안, 선거를 실시하는 공직자는 VBM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기에 의해 집계된 투표용지의 공개 수작업 집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선거 공직자는 공개 수작업 집계 대상인 초기 카운티 내 투표구의 1% 또는 VBM 투표용지 묶음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 주 총무처에서 채택하는 무작위 숫자 생성기 또는 규칙에 명시된 기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작위 추첨은 공개되며 참관 가능합니다.

- 초기 카운티 내 투표구의 1%가 투표용지의 모든 경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모든 경선이 수작업 개표 감사에 포함되도록 추가 투표구를 무작위로 추천합니다.
- 수작업 개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공직자가 선정 및 집계 실시 전에 최소 5일 이상 수작업 개표의 시간과 장소 및 공개 수작업 집계 대상인 투표구 또는 묶음 선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공고를 제공하는 공개 절차여야 합니다.
- 집계 부서원이 4인 1조로 캘리포니아 통일 투표 집계 기준에 따라 각 투표용지를 손으로 개표하여 수동으로 집계합니다
  - 1명은 투표를 읽습니다
  - 1명은 집계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2명은 집계표를 이용해 투표를 집계합니다
- 선거를 실시하는 공직자는 1% 수작업 집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투표 공식 개표 점검 인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투표 시스템 집계와 수작업 개표 사이의 불일치를 특정하여 각 불일치의 해결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Elec. Code § 15360

## 위험 제한 감사

위험 제한 감사(RLA)는 선거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추가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의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20 자리 무작위 시드 번호를 생성하는 공개 추천이 실시됩니다. 결과가 올바르다는 95%의 신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무작위 시드 번호를 사용하여 감사할 투표용지를 선정합니다. 무작위 추천은 공개되며 참관 가능합니다.
- RLA는 카운티 경계 내 온전히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경선에 실시됩니다. 감사 시작과 투표용지 선정은 경선이 감사 되는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RLA는 선거 공직자가 최소 5일 이상 위험 제한 감사 및 감사 실시에 사용될 투표용지 선정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공고를 제공하는 공개 절차여야 합니다.
- RLA는 투표용지가 유권자의 의도대로 집계되도록 개별 투표용지를 투표 기록과 비교합니다. 4인의 RLA 부서원이 캘리포니아 통일 투표 집계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의 수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 RLA를 실시하는 선거 공직자는 RLA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투표 공식 개표 점검 인증에 발표해야 합니다.
- 감사는 모든 선정된 투표용지가 감사 되고/되거나 95% 신뢰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부록 A:** 투표 시스템 참고자료: 어휘 사전 및 보안 기능

**부록 B:** 법령 참고자료

**부록 C:** 유권자 권리장전

## 투표 시스템 참고자료: 어휘 사전 및 보안 기능

### 100 피트 표지판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로부터 약 100 피트에 게시되는 표지판. 이 표지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을 설정합니다.

### Access Controller (액세스 컨트롤러)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를 위한 용도로 Verity Touch Writer 에 포함된 컨트롤러(제어기).

### 미국인 장애인법 (ADA)

공공 영역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 ADA 지침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한 개조가 필요한 투표센터의 경우, 장비 설정 또는 표지판 게시에 대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나타내는 지침이 제공됩니다.

### AutoBallot (오토발렛)

Verity Print 및 Verity Touch Writer 에서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위해 투표용지 카드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휴대용 기기.

### 투표용지 박스

Verity Scan 아래 들어가는 큰 검은색 상자. 스캔한 공식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검정색 투표용지 수거 박스

설치하는 날에 투표센터 물품을 운반하는 큰 바퀴 달린 가방. 선거 물품 및 자료가 꺼내어지면 CVR 봉투, VBM 봉투, 폐기용 봉투 및 모든 유효한 스캔하지 않은 종이 투표용지를 위한 투표용지 수거 상자로 사용됩니다.

### 투표용지 영수증

유권자에게 올바른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영수증 프린터에서 인쇄된 티켓.

### 투표용지 보관 관리 절차 양식

투표센터와 수거 센터 사이에 투표용지 운송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 매일 저녁 새 양식이 작성되며 파란색 투표용지 운송 가방에 보내집니다.

### 투표용지 투입함

VBM 투표용지를 수거하기 위해 설계된 보안 강철 컨테이너. 카운티 전역에 걸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투표용지 수거팀

정기적으로 투표용지 투입함 및 수거센터에서 종이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ROV 창고로 운송하는 2 인 1 조의 훈련된 직원.

## 투표용지 유형

선거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경선 조합의 투표용지.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는 한가지 투표용지 유형에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투표용지 유형을 가진 여러 투표구가 있을 수 있다. 투표용지 유형 정보는 vDrive 로 전달됩니다.

## 바코드

인쇄된 다양한 너비의 세로 막대로 이루어진 가로 줄무늬로, 10 진법 각 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그룹. Hart 투표 시스템에서 종이 투표용지를 올바르게 스캔하려면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Verity Central 은 바코드를 사용하여 투표용지페이지의 선거 식별자(ID), 정당 ID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만), 언어 ID, 투표구 ID, 시트 ID, 페이지 번호, 투표용지 유형 및 이중 코드를 나타냅니다.

## 검정색 폴더

차량에서 종이 투표용지로 투표하기를 선택한 유권자가 사용하는 두꺼운 종이 커버 폴더.

## 파란색 투표용지 운송 가방

매일 저녁 투표센터에서 수거 센터로 투표용지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큰 파란색 캔버스 가방.

## 부서/이중언어 구성원 배지

각 부서를 고객 서비스 담당자라 알려주는 이름 배지. 이중 언어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배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

선거에서 정치 공직에 출마하도록 지명된 자.

## 카트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큰 금속 구조물.

## 투표 기록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택한 익명 경선 선택지 기록. 하나의 투표 기록은 하나의 투표용지와 같습니다.

## 투표 마감

선거일 밤 마지막에 모든 투표센터에서 Touch Writer 및 Verity Scan 기기로 완료하는 절차. 투표가 마감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수거 센터

투표용지 반납을 위한 지정 시설. 모든 투표센터는 지정 수거 센터가 있습니다.

## 조건부 유권자등록 (CVR)

조건부 유권자등록은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캘리포니아의 기존 15 일 등록 마감 기한을 연장하여 선거일 14 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임시로 등록 및 투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경선

투표용지에 해야 할 선택; 경선. 경선 유형은 공직, 법안, 주민투표, 발의안 및 질의를 포함합니다.

##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 (VIG)

건본 투표용지 및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특정 경선의 지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안내서.

## 가두 투표자

차량에서 또는 투표센터 밖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이 제한된 유권자.

## 고객 서비스 담당자 (CSR)

예전에는 투표소 직원으로 알려짐. 고용된 ROV 직원은 투표센터에서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 CVR 봉투

유권자 자격에 기반하여 등록 또는 재등록해야 하는 비표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빨간색 테두리의 양식 및 봉투.

## 일일 봉투 장비 보관 관리 절차 봉투 참조

## 표지판 투표 정보 표지판 참조

## 드라이브스루 투표용지 반납

선정된 투표센터의 우편 투표용지 반납 지정 구역. 투표 기간 동안 드라이브스루 구역은 매일 아침 설치되며 매일 저녁 철거됩니다.

## 선거 요약

주 총무처에서 제공하는 선거법 안내서. 요약본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에서 편집하여 선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합니다. 사본은 투표센터와 주 총무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선거 ID

모든 선거 고유의 선거 식별 코드. 선거 ID 는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됩니다.

## 선거운동

투표센터가 있는 건물 입구, 가두 투표 장소, 또는 투표용지 투입함으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서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의 가시적 표시 또는 청각적 유포. 투표센터 안이나 투표를 위한 줄에 있는 유권자에게 아무도 투표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 유권자 명단 전자기기 (ePollbook)

투표센터에서 전자식으로 유권자를 체크인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

## 암호화

의도된 수신자 외에 아무도 데이터를 읽지 못하도록 평문을 암호문(암호화된 메시지)으로 변환하기 위해 암호학에서 사용하는 절차.

## 장비 보관 관리 절차 봉투

투표 환경 보안 유지를 위해 투표 장비의 보안 봉인 및 식별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큰 봉투. 또한 투표센터에서 당일에 인쇄된 모든 보고서 및 투표용지 카드를 담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 연장 코드

고정 콘센트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깃줄.

## 사건 보고서

투표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기록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사용하는 문서.

## 관할구역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하는 투표구 또는 투표구 그룹.

## Magnaviewer (매그나뷰어)

시각 장애가 있거나 투표용지 또는 투표 자료를 읽는 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면 확대경.

## 실시간에 가까운 유권자 데이터

이 선거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권자 명단 전자 기기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통해 암호화된 유권자 등록 및 참여 정보를 송신 및 수신합니다. 이로써 모든 투표센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유권자 데이터를 교신할 수 있습니다.

## 무소속 유권자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

## 비표준 유권자

표준 체크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유권자. 이러한 유권자는 유권자 명단 전자 기기에 추가 정보 필요 또는 향후 절차 필요를 나타내는 지정이 생깁니다. 투표를 원할 경우 CVR 봉투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

선거 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투표일 동안 투표센터 운영과 선거관리국에서의 투표용지 처리 절차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 OC Ballot Express (OC 밸럿 익스프레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온라인 우편투표 추적 시스템.

## 공식 투표용지

공식 투표용지 종이에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투표용지.

## 공식 투표용지 종이

공식 워터마크가 있는 리걸 사이즈 종이. 보안 처리된 프린터, 상자, 그리고/또는 잠금 및 덮개가 있는 카트 내부에 보관합니다.

## 공식 투표용지 반송 봉투

투표센터를 방문해 교체 우편 투표용지를 요청하는 유권자에게 주는 우편투표 봉투.

## 주황색 캔버스 가방

Verity 열쇠, AutoBallot 및 헤드폰 보관에 사용하는 가방.

## 플라스틱 투표 표지판 및 투표 팻말

유권자를 투표센터 입구로 안내하는 팻말을 사용하여 투표센터로 가는 길에 배치한 방향 안내 표지판.

## 정당

동일한 이념을 갖거나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된 단체.

## 투표 모니터 *참관인 참조*

**투표소 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CSR) 참조**

**투표소 투표센터 참조**

**투표구**

유권자로 구성되고 선거 행정 목적으로 형성된 카운티 내 지리적 구역.

**투표구 공고**

투표센터 안과 밖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는 주 총무처가 제공하는 공고. 이 공고는 선거 절차 및 유권자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사전 정의**

투표센터 장비의 개별 단위가 선정된 투표용지 유형 및 운영될 투표센터에서 제공될 투표구만 사용하여 “정의”되는 선거 전 구성 절차.

**대통령 총선거**

대통령과 국회 구성원이 선출되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선거. 또한 지역 공직 선거도 포함합니다.

**대통령 예비선거**

유권자가 다가오는 총선거를 위한 대통령 후보자 및 국회 구성원을 지명하는 선거.

**프린터 보관 관리 절차 양식**

OKI 프린터 용지 트레이 및 잠금 및 덮개가 있는 카드보드 상자 내 배치된 공식 투표용지 종이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

**임시 투표용지**

비표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공식 투표용지. 임시 투표용지는 추가 절차를 위해 봉투 안에 투표해야 하며 투표센터의 Verity Scan 기기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는 [ocvote.gov/provisional](http://ocvote.gov/provisional) 을 방문하여 임시 투표용지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임시 봉투 CVR 봉투 참조**

**임시 유권자 비표준 유권자 참조**

**조정 기록**

각 Verity Scan 기기에서 스캔한 모든 투표용지를 추적하는 기록. 현장 바인더에 위치하며 개장 및 폐장 절차 동안 사용됩니다.

**선거관리국 (ROV)**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거 실시를 책임지는 카운티 기관.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 (RAVBM)**

원거리 이용 우편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용지를 다운로드하고 기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체 우편 투표용지**

유권자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자신의 VBM 투표용지를 교체하도록 투표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는 우편 투표용지.

**보안 스티커**

손상되면 “VOID”(무효) 문자를 표시하는, 투표 장비 외부에 붙이는 보안 스티커.

## **보안 식별표**

투표 장비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이 가능한 유선 또는 집타이 유형의 식별표.

## **비밀 폴더**

유권자 선거 선택지(들)의 개인정보 보호 확보에 사용하는 접이식 폴더.

## **Sip and Puff Tube (빨대 튜브기)**

투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Verity Touch Writer 에 연결하여 유권자가 입으로 조종하는 개인 투표 입력 기기.

## **현장 바인더**

설치 지침, 보관 관리 절차 양식, 특정 투표센터 정보, 사건 보고 양식 및 연락처 목록을 담은 3 고리 바인더.

## **작은 녹색 가방**

vDriver 의 보관 및 운반에 사용하는 작은 가방.

## **훼손된 투표용지**

유권자의 실수, 기계에 의한 훼손, 또는 중복 인쇄로 무효가 된 투표용지.

## **폐기용 봉투**

폐기된 투표용지 보관에 사용하는 봉투. 매일 밤 훼손된 투표용지 개수를 봉투에 쓰고 밀봉한 봉투를 파란색 투표용지 운송 가방에 넣어서 수거 센터에 보냅니다.

## **스탠천**

줄 관리를 위해 경계선을 형성하도록 세우는 막대.

## **표준 유권자**

표준 체크인 및 투표 절차를 따르는 유권자.

## **주 전역 직접 예비선거**

유권자가 국회 구성원 및 주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예비선거. 정당과 관계없이 각 경선의 최다 득표 2 인이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 **주 전역 총선거**

예비선거에서 지명된 최다 득표 2 인 중 한 명이 선출되는 선거. 또한 지역 공직 선거가 포함됩니다.

##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

연방 및 주 전역 후보자와 주 전역 투표 법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스테이션 표지판**

체크인, 투표 및 스캔을 위해 해당 스테이션에 배치되는 표지판.

## **단전 보호용 전기 콘센트**

막대형 전기 콘센트.

## **투표소 일시 중단**

투표센터가 밤에 마감하고 다음 날 운영을 재개할 때 Verity Touch Writer 및 Verity Scan 에서 완료되는 절차.

## 근무시간 기록표

급여 목적으로 직원의 근무 시간 기록에 사용하는 종이.

## Translate Utility

여러 언어로 음성을 캡처하고 투표용지 문자를 번역하기 위한 BUILD 응용 프로그램 내 Hart 시스템 유틸리티.

## 번역된 참조 투표용지

요청 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영어 투표용지의 번역 사본.

## vDrives

투표용지 유형 데이터를 담고 투표 기록을 보관하는 검정색 USB 장치.

## Verity Print

주문형 투표용지 인쇄 기기.

## Verity Scan

투표용지 스캔을 위한 디지털 스캐너.

## Verity Touch Writer

접근 가능한 투표용지 기표 기기. 유권자는 선택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또는 Access Controller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권리장전

주 총무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필수 언어로 유권자 권리를 요약하며 투표센터 안과 밖에, 눈에 보이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 우편투표 (VBM) 투표용지

투표센터에서 수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후보자 및 법안이 실려 있는, 기표 방법과 반송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우송되는 종이 투표용지.

## 우편투표 (VBM) 봉투

유권자가 VBM 투표용지를 우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봉투.

## 투표센터

유권자가 투표, 유권자등록 문제 해결, 유권자등록, 전자식 체크인, 교체 투표용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장기간 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풀서비스 현장 투표 경험.

## 투표센터 핸드북

투표센터 운영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 훈련에 사용하는 매뉴얼.

## 투표센터 정보 안내서

견본 투표용지와 모든 지역 후보자 및 투표 법안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안내서.

## 우편투표 현황 *OC Ballot Express* 참조

## 투표 정보 표지판

투표 장비와 함께 투표센터에 전달되는 진열대.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권자등록 양식 *CVR 봉투* 참조



**투표권법**

카운티가 유권자에게 더 큰 유연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2016 년에 통과된 법안.

**기표소**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작은 밀폐된 공간.

**휠체어 접근 표지판**

이 표지판은 장애 유권자를 투표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기명 후보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유권자가 이름을 기재하여 투표할 수 있는 후보자.

**제로 보고서**

첫 투표자가 서명할 Verity Touch Writer 및 Verity Scan 기기에서 인쇄되는 필수 보고서. 보고서는 모두 0 을 표시하며 투표 첫날 이전에 투표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 법령 참고자료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인용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을 따릅니다.

### 참관인의 전자 기기 사용

2302. 유권자 또는 다른 사람이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기타 휴대용 장치를 포함한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본 규약의 제 14221, 14224, 14291, 18370, 18502, 18540, 18541 항 또는 본 규범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해당 장치의 사용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OCROV 는 캘리포니아 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Santa Ana 에 위치한 OCROV 사무소의 투표센터와 투표용지 개표점검 작업 구역에서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해당 선거법 조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194. (a) 2194.1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7924.000 항에 명시된 유권자 등록 정보에 대한 선서진술서는:

(1)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카운티 선거공직자 사무소에서 일반대중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단말기, 목록, 선서진술서, 선서진술서 사본 또는 기타 매체에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2)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적, 사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 유권자 또는 유권자의 가정에 대한 괴롭힘.

(B) 유권자 또는 유권자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권유, 판매 또는 마케팅.

(C) 3 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쇄물, 방송 영상 또는 오디오, 인터넷 또는 기타 컴퓨터 단말기에 전시하는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3) 제 2166, 2166.5, 2166.7 및 2188 절의 규정에 따라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 후보자, 법적 공표가 이루어진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위원회, 선거, 학술, 언론 또는 정치적 목적 또는 주 총무처장관이 결정하는 정부 목적을 위해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주 총무처장관에 의해 정부법 제 12173 항에 따라 유권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번호,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번호 및 등록 유권자의 유권자 등록 선서진술서에 표시되거나 2002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52 U.S.C. 제 20901 항 이하 참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록에 추가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고유 식별자는 기밀이며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등록 선서진술서에 표시된 유권자의 서명 또는 그 이미지는 기밀이며 부조항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c) (1) 유권자의 자택 주소 또는 서명은 15105 부터 15108 항까지(15105 항 및 15108 항 포함) 또는 14 부 3 장 3 조(14240 절로 시작)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투표에 이의가 제기될 때마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주소나 서명은 이의 제기를 위해, 이의 제기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 또는 이의 제기를 판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의제기자, 선거공직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 선거공직자는 유권자의 서명이 유권자 등록 선서진술서 또는 그 이미지 또는 청원서의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서명을 복사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d) 정부기관 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 항에 언급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 이 항의 목적상, "유권자의 가정"은 2150 항의 부조항 (a) (3) 및 (4)절에 따라 등록 선서진술서에 제공된 유권자의 거주지 또는 우편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해당 우편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우편투표용지 확인 봉투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우편투표용지 확인 봉투의 서명이 유권자의 등록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에 관한 정보는 본 항 및 정부법 7924.000 항에 따라 유권자 등록 기밀 정보로 취급됩니다. 이 정보는 이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보를 공개할 때는 수령인에게 제 18109 및 18540 항에 관한 고지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부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유권자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고 검색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7924.000

(a) 선거법 제 2194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두 가지는 모두 기밀이며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1) 자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투표구 번호 또는 기타 유권자 등록 목적으로 주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번호.

(2) 등록 선서진술서에 표시된 사전 등록 정보.

(b)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번호, 캘리포니아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번호 및 등록 선서진술서에 표시되거나 2002 년 연방 미국 투표 지원법(52 U.S.C. 제 20901 항 이하 참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 기록에 추가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고유 식별자는 기밀이며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c) 등록 선서진술서에 표시된 유권자의 서명은 기밀이며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d) 이 항의 목적상, "자택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을 의미하며, 개인의 도시 또는 우체국 주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2 편 19001(h)항

(h) "유권자 등록 정보"란 이 조, 선거법 제 2194 항 및 정부법 6254.4 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 기관이 허가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등록 유권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에는 각 유권자의 기록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등록 카운티, 고유 등록 식별 번호, 이름, 거주지 주소,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호 언어, 생년월일, 성별, 선호 정당, 등록 상황, 등록 날짜, 투표구, 등록 방법, 출생지, 등록 상황 사유(가장 최근 등록 갱신 사유), 투표 지원 요청 상태, 영구 우편 투표 상태, 카운티 유권자 식별 번호, 투표 참여 이력(선거 날짜 및 투표 방법).

14221. 투표소가 마감되기 전에는 투표용지를 수령하거나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유권자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투표구 위원회에서 허가한 사람만이 기표소 구역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14224. (a) 14222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표소 또는 칸은 한 번에 한 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점유할 수 없으며, 유권자가 보조를 받는 유권자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 (1) 2 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기표소나 칸에 머물거나 그곳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그 시간은 10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투표구 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더 긴 시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유권자가 선거 진행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표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거공직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선거공직자는 해당 유권자에게 기표를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4291. (a)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유권자는 부조항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용지를 그 내용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b) 유권자는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18370. 아래의 "유권자들에 대한 범죄적 간섭"항을 참조하십시오.

18502. (a)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점검을 수행하는 담당관을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여 선거 또는 개표점검이 공정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선거에서 유권자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선거에서의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형법 1170 항의 부조항 (h)에 따라 16 개월 또는 2~3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이 절의 목적상,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점검을 수행하는 담당관"에는 선거법 조항의 관리와 관련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주 총무처장관 및 그 직원, 선거 실시 또는 개표점검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 수행에 있어 임시직 및 투표소 직원,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선거공직자 및 그 직원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이 항의 목적상,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점검을 수행하는 것"에는 선거법 및 주 총무처장관이 채택한 적용가능한 규정의 의해 관리되는 선거 참관 과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 이 항의 목적상, "선거에서의 투표"에는 3018 항에 따른 위성 위치를 포함한 투표소 또는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과 3017 항의 부조항 (a)에 따라 우편으로 투표하고 투표된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8540.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 폭력, 강압 또는 위압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가 선거에서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1170 항의 부조항 (h)에 따라 16 개월 또는 2~3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 폭력, 강압 또는 위협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게끔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선거에서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고용 또는 지시하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1170 절의 부조항 (h)에 따라 16 개월 또는 2~3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 이 항의 목적상, "선거에서의 투표"에는 3018 항에 따른 위성 위치를 포함한 투표소 또는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과 3017 항의 부조항 (a)에 따라 우편으로 투표하고 투표된 투표용지를 반송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8541.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할 의향을 가지고 부조항 (b)에 명시된 100 피트 제한 거리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유권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의 투표용지 기표에 관한 주제로 유권자와 대화하는 행위.

(2) 14240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자격조건과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유권자의 자격조건을 주제로 유권자와 이야기하는 행위.

(3)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를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하는 행위.

(4) 진입, 진출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b) 세부항 (a)에 명시된 행위는 다음 중 하나로부터 100 피트 이내에서 금지됩니다:

(1) 338.5 항에 규정된 투표소, 선거관리사무소 또는 3018 항에 규정된 위성 위치가 존재하는 건물의 입구.

(2)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가두 투표 장소를 포함한 실외 장소.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할 의향을 가지고 투표를 하기 위해 또는 투표용지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유권자의 바로 근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투표를 요청하는 행위.

(2) 유권자의 투표용지 기표에 대한 주제로 유권자와 이야기하는 행위.

(3) 시각적 또는 청각적 선거운동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d)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 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립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 투표 개표점검 - 개표점검 위원회 위원

15304. 중앙 개표소를 사용하는 관할권에서는 선거공직자가 3 인 이상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투표구에서 반납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 또는 용기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제대로 인증되지 않았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경우, 선거공직자는 투표구 담당관들을 소환하여 선서 하에 투표소 절차를 설명하고 오류나 누락을 수정해야 합니다.

#### 개표점검 - 우편투표용지(VBM)

15100. 이 장의 규정은 선거 29 일 전 기간 동안, 최종 직전 개표점검 기간 동안, 그리고 공식 개표점검 기간 동안 VBM 투표용지 처리에 적용됩니다.

15101. (a)우편 투표가 실시되는 관할권은 선거 29 일 전부터 우편투표용지 반송 봉투를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처리에는 3019 항에 따라 우편투표용지 반송용 봉투에 있는 유권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유권자 이력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필요한 전산능력을 갖춘 관할권은 선거 29 일 전부터 우편투표용지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 처리에는 우편투표용지 반송 봉투 개봉, 투표용지 제거, 훼손된 투표용지 복제, 기계 판독을 위한 투표용지 준비 또는 기계가 집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명 투표 처리 등이 포함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 당일 오후 8 시까지 개표 결과에 접근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모든 관할권은 선거 전날 오후 5 시에 우편투표용지 처리를 시작합니다.

(c)우편투표용지 집계 또는 개표 결과는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15102. 공직자는 VBM 투표용지를 개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의 특별 개표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개표 진행 위원회 구성원의 의무 분배와 집계 장부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작업으로 집계를 하는 경우에는 각 공직이나



발의안마다 최소한 4 인의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은 투표용지를 판독하고, 두 번째 사람은 오류나 부적절한 투표가 있는지 감시하며, 나머지 두 명은 집계를 진행합니다.

15103. 선거공직자는 VBM 투표용지 개표 진행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상은 선거를 실시하는 기관의 재무국에서 다른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합니다.

15104. (a)VBM 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처리 및 VBM 투표용지의 처리 및 개표 결과는 선거 전후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b)카운티 대배심 구성원, 공화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민주당 카운티 중앙위원회, 그리고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있는 기타 정당의 각 1명 이상의 구성원 및 기타 관심 있는 조직은 VBM 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처리부터 개표 및 폐기까지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는 방식을 참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선거공직자는 VBM 유권자 참관인들과 대중에게 VBM 투표용지가 처리되고 개표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최소 48 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d)2194 항의 부조항 (b) (2)절에도 불구하고, 우편투표 참관인들은 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에 의한 투표와 그 위의 서명을 관찰하고, 다음을 포함한 우편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우편 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서명을 유권자 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
- (2)손상되었거나 불량한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
- (3)선거일 개표되기 전까지 투표용지 부당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VBM 투표용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

(e)VBM 유권자 참관인은 VBM 투표용지 반송 봉투 처리나 우편 투표용지 처리 및 개표 과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다루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15105. 우편 투표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에 대해 제기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투표용지가 본 규칙에서 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았거나, 해당 개인이 중범

유죄판결을 받아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된 우편 유권자의 식별 봉투가 개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5106.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VBM 투표용지 반송 봉투의 처리, VBM 투표용지의 처리 및 개표, 그리고 VBM 투표용지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는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유권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자는 이의가 제기되는 시점에 이의의 타당성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15109. 본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VBM 투표용지의 개표 및 개표점검은 투표구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와 동일한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15110. 선거공직자는 3 장(제 15150 항부터 시작) 및 4 장(제 15300 항부터 시작)에 따라 VBM 투표용지 개표점검 결과를 주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15111. 선거공직자는 각 선거에서 VBM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투표한 모든 유권자의 정확한 명단을 보관하고, 이 명단을 15278 항에 규정된 유권자 명부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 명단에는 유권자의 선거 투표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15112. 선거가 제 10 부(제 10000 항부터 시작)에 따라 통합되고 통합 선거에서 한 가지 형태의 투표용지 양식만 사용되는 경우, VBM 유권자 특권이 법적으로 확장된 선거와 관련하여서만 VBM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집계되어야 합니다.

본 규칙 또는 본주의 다른 법률에 의해 어떤 선거에 대해 규정된 대로 개표를 위해 선거공직자에게 VBM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접수되어야 하는 기간이 다른 선거에 규정된 기간과 다르며 선거가 통합되어 두 선거에 한 가지 양식의 투표용지만 사용되는 경우, 통합 선거를 위해 발행된 모든 VBM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둘 중 더 긴 기간 내에 선거공직자에게 접수되면 두 선거 모두에 대해 개표할 수 있습니다.

## 개표점검 - 1% 수동 집계

15360. (a)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는 모든 선거에 대한 공식 개표점검 중에, 선거공직자는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하여 그 장치에 의해 개표점검된 투표용지의 공개 수동 집계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1) (A)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포함하되 임시 투표용지는 포함하지 않은 최종 직전 개표점검에서 개표된 투표용지의 공개 수동 집계에는 선거공직자가 무작위로 선택한 투표구의 1%에서 투표된 투표용지가 포함됩니다. 1%의 투표구가 전체 투표구 하나보다 적은 경우, 집계는 선거공직자가 무작위로 선택한 한 투표구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B) (i) 1% 수동 집계에 더하여, 선거공직자는 각 투표구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경선 하나마다, 1 개의 추가 투표구를 추가로 개표해야 합니다. 수동 집계는 이전에 개표되지 않은 경선에만 적용됩니다.

(ii) 선거공직자는 선거공직자의 재량에 따라 수동 집계를 위한 추가 투표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우편투표 및 임시 투표용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 2 단계 공개 수동 집계:

(A)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또는 임시 투표를 포함하지 않은 최종 직전 개표점검에서 개표된 투표용지의 공개 수동 집계에는 선거공직자가 무작위로 선택하고 (1)절에 따라 실시하는 투표구의 1%에서 투표된 투표용지가 포함됩니다.

(B) (i) 최종 직전 개표점검에서 개표된 우편 투표용지 중 1% 이상의 공개 수동 집계.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묶음은 선거공직자가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ii) 이 항의 목적상, "묶음"은 투표 시스템 장치에 의해 표로 정리된 투표용지 세트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투표 시스템은 투표 결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ii) (I)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1% 수동 집계에 더하여, 선거공직자는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초기 1% 수동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각 경선 하나마다 추가로 한 묶음의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해야 합니다. 수동 집계는 이전에 개표되지 않은 경선에만 적용됩니다. (II) 선거공직자는 선거공직자의 재량에 따라 수동 집계를 위한 추가 묶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우편투표 및 임시 투표용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선거공직자는 무작위로 최초 투표구, 우편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묶음 또는 공개 수동 집계 적용을 받는 직접 기록 전자투표 장비를 선택하기 위하여 주 총무처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무작위 수 생성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c) 선거공직자는 선거일 투표를 마감할 때까지 초기 투표구를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수동 집계를 위한 추가 투표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d) 수동 집계는 공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선거를 주관하는 공직자는 집계 및 투표구, 묶음, 또는 직접 기록 전자투표 장비의 선택을 실시하기 최소 5일 전에 수동 집계의 시간 및 장소와 공개 수동 집계 대상 투표구, 묶음, 또는 직접 기록 전자투표 장비의 선택 시간 및 장소를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e) 선거공직자는 투표의 공식 개표점검 인증에 1% 수동 집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계 집계와 수동 집계 간의 모든 불일치와 각 불일치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자식 또는 전기 기계식 투표 집계 장치에 의해 기록된 투표와 관련된 불일치를 해결함에 있어, 유권자가 검증한 종이 감사 추적이 전자 기록과 불일치하는 경우 종이 감사 추적이 전자 기록보다 우선합니다.

##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14240. (a)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의 사유에 의해서 투표소 내에서 투표구 위원회 위원에게서만 구두로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 (1) 유권자가 명부에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아닌 경우.
- (2) 유권자가 투표구 거주민이 아니거나 유권자 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해당 카운티 거주민이 아닌 경우.
- (3) 유권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 (4) 유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경우.

(b) 투표구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밖에 선거 실시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유권자의 선거 자격조건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c)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특정인의 거주지 또는 기타 투표 자격조건에 관한 문서 또는 명단을 수신하고 해당 문서 또는 명단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명시적 또는

목시적 제안, 요청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먼저 문서 또는 명단에 해당 이의 제기를 정당화하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그러한 명단이나 문서를 사용하기 전에 즉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공직자에게 연락하여 문서 또는 명단의 내용 및 투표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받은 증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선거공직자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입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대의명분의 충분성 및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의 이의 제기를 위한 심리 및 절차, 투표구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률에 대해 조언해야 합니다. 선거공직자는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 위원회 위원들의 문의를 받고 답변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4241. 우체국에서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우편물은 다른 증거나 증언이 제시되지 않는 한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거주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로 받아들이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나 증언 없이 우편물만을 투표구 위원회가 이의를 결정할 때 단독적으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14242. 14240 항의 부조항 (a) (2)절에 설명된 이의 제기 사유는 캘리포니아 내 어느 투표구에서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선거 전 14 일 이내에 해당 투표구에서 이사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4243. 투표하려는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귀하는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본인임을 선서(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 14244. 투표하려는 사람이 투표구 거주민이 아니거나 투표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카운티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당한 사람은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선서해야 하며, 선서를 마친 후 투표구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람에게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투표구의 거주민입니까?" 또는 투표센터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귀하는 카운티 거주자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다른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14245. 이의 제기를 당한 사람이 이미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이의 제기를 당한 사람에게 다음 선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번 선거에서 이미 VBM 투표용지에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한 적이 없음을 선서(또는 확인)해야 합니다."
14246. 이의 제기를 당한 사람이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이 아니거나 당일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람이 14243 항 또는 14245 항에 설명된 선서를 하면 이의를 제기당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결정됩니다.
14247. 투표구 거주민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유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의 제기 당시의 투표구 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합니다. 투표구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투표소에 배석하고 있으며 선서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중 이의 제기 사실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248.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선서 대상자의 거주지에 관한 선서를 진행하기 전에 선서 대상자에게 2 부 1 장의 14249 항 및 2 조(제 2020 항부터 시작)에 규정된 규칙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14249. 이의 제기를 당한 사람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선서 및 거주지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14250. 투표구 위원회는 개인의 거주지를 결정할 때 2 부 1 장 2 조(제 2020 항부터 시작)에 설명된 규칙을 따릅니다.
14251. 법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를 당한 유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14252. 투표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a) 이의 제기를 당한 각 사람의 이름과 주소.  
 (b) 특정 개인의 투표 자격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4247 항에 따라 증언한 각 사람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유권자로서의 신분 증명과 함께 정보 또는 증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기타 신분증.  
 (c) 각 이의제기의 근거.  
 (d) 이의 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과 이와 관련된 모든 서면 증거.

(e)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증거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해당 증거는 선거 실시를 담당하는 선거공직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14253. 투표구 위원회가 유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 제기로 인해 유권자가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부당한 협박을 우려하여 투표를 포기할 정도로 투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모든 이의 제기를 중단하고 명부에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 선거 운동 금지

**경고: 선거 운동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유권자의 바로 근처나 투표소 입구, 가두 투표 혹은 투입함에서 100 피트 이내에서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지되어 있는 행위:

- 다른 유권자에게 어떤 후보자나 투표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혹은 로고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용지 투입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투표용지 투입함 근처를 배회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센터 혹은 투표용지 투입함 근처에서 후보자 혹은 투표 법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자료 혹은 청각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법률발의안, 주민투표, 소환 혹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하여 어떠한 청원서도 배포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 및/또는 후보자 혹은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류(모자, 셔츠, 간판, 단추, 스티커)를 배포, 전시 혹은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전시하시거나 유권자에게 이를 발설하지 **마십시오**.

위에 요약하여 정리된 선거 운동 금지령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8부 제 4장의 7조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 투표 절차에서의 부정

**경고: 투표 절차에서의 부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은 범칙금 및/또는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지되어 있는 행위:

- 부정선거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어떠한 방식 또는 방법으로도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려는 어떠한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 투표권을 가질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투표를 시도하려 하거나 혹은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돕지 **마십시오**.
-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하거나; 투표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권자를 촬영하거나 기록하거나; 혹은 진입, 진출 또는 주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다른 사람의 투표권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권자 등록이 되지 않다고 허위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하였는지 확인하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 투표소 바로 근처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치안관, 경비원 혹은 보안 인력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주선하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를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 혹은 변조하지 **마십시오**.
- 선거의 결과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투표 목록, 공식 투표용지 혹은 투표 컨테이너를 임의로 조작, 파괴 혹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공식 투표함이라고 속을 수 있는 비공식 투표함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조작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노인을 자신의 의향에 반하여 투표자나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선거담당관이 아닌 경우라면 선거담당관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직장으로 가져오거나 직장에서 투표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투표구 위원회 위원은 유권자의 투표방식을 결정하거나, 해당 정보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한 방법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에 요약된 투표 절차에서의 부정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금지령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 18 부 제 6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유권자들에 대한 범죄적 간섭

18370. (a) 누구든지 선거일 혹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는 동안 부조항 (b)에 명시되어 있는 100 피트 제한 내에서 다음의 선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법률발의안, 주민투표, 소환 혹은 후보자 지명 혹은 기타 모든 청원서를 배포하는 행위.
  - (2) 투표를 요청하거나 유권자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주제로 유권자와 이야기하는 행위.
  - (3) 유권자의 자격조건과 관련된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14240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자격조건을 주제로 유권자에게 이야기하는 행위.
  - (4) 319.5 항에 정의된 대로 선거 운동을 수행하는 행위.
- (b) 부조항 (a)에 설명된 활동은 다음 중 하나에서 100 피트 이내에서는 금지됩니다:
- (1) 338.5 항에 규정된 투표소, 선거관리사무소 또는 3018 항에 규정된 위성 위치가 존재하는 건물의 입구.
  - (2)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 있는 가두 투표 장소를 포함한 실외 장소.
- (c) 누구든지 선거일 또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투표 기표소 또는 투표용지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유권자의 바로 근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투표를 요청하는 행위.
  - (2) 유권자의 투표용지 기표에 대한 주제로 유권자와 이야기하는 행위.
  - (3) 시각적 또는 청각적 선거운동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d) 이 섹션에서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8540.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 폭력, 강압 또는 위압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가 선거에서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1170항의 부조항 (h)에 따라 16개월 또는 2~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 폭력, 강압 또는 위협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게끔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선거에서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법안에 대해 투표했거나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고용 또는 지시하는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1170 절의 부조항 (h)에 따라 16개월 또는 2~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8541.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할 의향을 가지고 부조항 (b)에 명시된 100 피트 제한 거리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유권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의 투표용지 기표에 관한 주제로 유권자와 대화하는 행위.
- (2) 14240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의 자격조건과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유권자의 자격조건을 주제로 유권자와 이야기하는 행위.
- (3)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를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하는 행위.
- (4) 진입, 진출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d)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2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립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18543. (a)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부정확한 혹은 거짓된 이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지 유권자의 투표를 방지하거나 투표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에 대한 대량적, 무차별적,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혹은 실제로 투표 자격을 갖추었거나 등록된 사람에게 투표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조언하는 사람, 또는 제 14240 항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12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징역 또는 주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a)항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사람은 모두 중범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 임시 투표용지

14310. (a) 모든 선거에서 정당하게 등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투표구 명부 심사 혹은 카운티 선거공직자에게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여 즉시 투표 자격조건 혹은 투표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유권자는 다음과 같이 임시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1) 선거공직자는 유권자에게 임시 투표용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 (2) 임시 투표용지, 투표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서면 지침,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자격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면 지침에는 부조항 (c) 및 (d)에 설명되어진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유권자는 선거 공무원 앞에서 자신이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를 하려는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서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b) 투표가 완료되면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밀봉되어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투표된 모든 임시 투표용지는 선거공직자의 지시에 따라서 선거공직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본 부조항에 명시된 임시 투표용지 봉투는 우편 투표용지에 사용되는 봉투와 색상이 다르지만 인쇄 방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비슷해야 하며 우편 투표용지 봉투와 동등한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c) (1) 공식 개표점검 기간 동안 선거공직자는 모든 임시 투표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3019 항에 따른 우편 투표에 대한 서명 비교에 적용되는 절차를 사용해서 선거공직자는 각 임시 투표용지 봉투의 서명을 유권자 등록 선서진술서의 서명 혹은 유권자 등록 기록의 기타 서명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임시 투표용지 봉투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는 거부됩니다. 이름이나 중간이름,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이니셜로 대체하여 생긴 서명의 변형은 투표용지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2) (A) 임시 투표는 다음 조건 중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공식 혹은 공식 개표점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 선거공직자가 공식 개표점검이 완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사무실 기록을 통해 원고의 투표권을 확인한 경우.
  - (ii) 임시 투표용지가 제 2 부 제 2 장 제 4.5 조 (제 2170 항부터 시작)에 따라서 투표 및 개표점검에 포함된 경우.
  - (iii) 유권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의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 (B) 유권자는 공식 개표점검이 완료되기 이전에 언제라도 본인의 투표와 관련해 이 절에 명시된 법원의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법 조치 및 항소는 다른 모든 민사적인 문제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법원 서기관은 원고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이와는 별도로 투표할 자격을 가진 유권자의 임시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선거공직자가 배정한 투표구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A)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투표구에서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후보자 및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선거공직자는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표를 집계하여야 합니다.

(B)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자신의 배정된 투표구에서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후보 혹은 법안이 포함된 경우에, 선거 관리원은 유권자가 배정된 투표구에서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후보 및 법안에 대한 투표만 집계하여야 합니다.

(d)주 총무처장관은 임시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한 모든 유권자가 본인의 임시 투표가 집계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집계되지 않았을 경우에 집계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접근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e)주 총무처장관은 이 조항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f)이 조항은 본인의 미투표 우편 투표용지를 포기할 수 없는 제 3015항에 설명된 모든 우편투표 유권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g) "특별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기존 공급된 수량의 봉투는 공급량이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311. (a)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한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그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투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유권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선거 당일 현 거주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이 부여된 투표소 혹은 카운티 선거사무소 혹은 그 선거 사무소가 지정한 중심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추후 선거를 위해 투표 장소에서 재등록해야 합니다.

(b)본 조항에 따른 유권자의 기표 투표는 제 14310 항에서 규정된 대로 임시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하여야 합니다.

14312. 이 조항은 임시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15350. 제 14310 항에 따라 실시된 임시 투표는 제 2 장(제 15100 항부터 시작)에 설명된 조항과 제 14310 항 및 14311 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처리되고 집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검표

15620. (a)공식적인 개표점검이 종료된 이후에, 모든 유권자는 5일 이내 그러나 5일차 오후 5시 이전까지 재검표는 주 전역에서 투표되지 않은 모든 공직자 후보,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 혹은 어떤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표에 대한 재검 요청을 카운티에서 선거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선거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어떤 후보, 선거인단 명단 혹은 법안에 대한 입장(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재검을 요청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b)선거가 두 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실시되는 경우에, 모든 유권자는 선거공직자와 함께하는 재검표 요청을 선거가 종료된 지 31일째부터 시작해 5일 이내 그러나 5일차 오후 5시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표는 영향을 받은 카운티 일부 또는 전체 내에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c)이 조항의 목적상, "공식적인 개표점검이 종료"는 선거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된 성명서에 서명하는 시간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단, 시 선거의 경우에 시의회가 결과 자체에 대한 개표점검을 시행하며 선거 공무원에게 개표점검 실시를 명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식적인 개표점검이 종료"는 운영위원회가 선출된 사람을 선언하거나 해당 법안이 승인 혹은 무산되었음을 선언한 시점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15621. (a) 공식 개표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모든 유권자는 주 전역 선거 이후 31일차부터 5일 이내에 주 전역 공직 후보자에 대한 투표 또는 주 전역에서 투표된 모든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투표를 재검표하기 위한 서면 요청서를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에는 재검표를 원하는 카운티가 명시되어야 하며, 어떤 후보자, 선거인단 명단 혹은 법안에 대한 입장(찬성 또는 반대)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인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b)주 총무처장관은 즉시 등기 우편을 통해 투표 재검표를 원하는 각 카운티의 선거공직자에게 요청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c) 본 항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서 실시된 재검표에 적용됩니다.
15622. 요청서에는 투표구를 재검토할 순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15623. 재검표가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 24 시간 동안에 다른 유권자는 원래 요청의 결과로 재검표되지 않은 동일한 공직 선거, 대통령 선거인 명부 혹은 법안에 대한 임의의 투표구의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624. 재검표를 요청하는 유권자로 대표되는 선거인 혹은 정부법 제 82013 항에 정의된 캠페인 위원회는 재검표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고 재검표가 시작된 이후 다음 날부터 매일 초에 재검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합니다. 재검표 결과 개표점검에서 과반수 미만의 최다 득표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후보자, 대통령 선거인명단 혹은 선언이 제출된 법안에 대한 입장(찬성 또는 반대)이 다수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혹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선거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재검표가 요청된 후보자가 다음 결선 선거 또는 총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표기되게 되는 경우 공탁된 돈은 공탁자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후보자, 명부 혹은 법안에 대한 입장이 과반수 미만의 최다 득표수를 얻지 못한 경우 혹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선거에서 재검표로 인해 해당 후보자가 차기 결선 투표 혹은 총선거에서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공탁자는 재검표 비용을 초과하여 공탁된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할 필요가 없는 재검표 비용은 해당 재무부에 예치됩니다.
15625. 재검표는 선거 관리인이 임명한 카운티 유권자 4명으로 구성되어진 특별 재검표 위원회가 선거 관리인의 감독하에 실시됩니다. 재검표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검표소 이외의 관할구역 내에서 검표소의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1 일 보상금과 동일한 보상금을 해당 공공 재무부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선거관리 공무원의 사무실이 재검표 대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특별 재검표 위원회를 임명하고 감독하기 위해 선거공직자 이외의 사무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15626. 재검표는 제 15620 항 혹은 제 15621 항 또는 제 15645 항에 따른 재검표 요청 혹은 명령을 선거관리인이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완료될 때까지 매일 6 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검표는 15628 항에 명시된 해당 유권자 본인에게 통지한 후 첫 날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15627. (a) 재검표 대상 투표가 투표 시스템에 의해 투표되거나 표로 작성된 경우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유권자는 특정 투표 시스템의 종류에 의해 투표되거나 표로 작성된 각 투표 세트에 대해 재검표를

수동으로 수행할지 혹은 원래 사용된 투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지에 대해 선택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투표 시스템에 의해 투표되거나 표로 작성되는 모든 투표의 재검표에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직접 기록 전자투표 시스템의 목적상 "수동으로 수행"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투표에 대한 유권자 확인 서면 감사 추적이 재검표를 요청한 유권자가 선택한 대로 수동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628. 재검표 개시 1 일 전까지 선거공직자는 재검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유권자에게 직접 혹은 연방정부에서 규정하는 속달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 (a) 재검표 대상이 되는 공직에 대한 모든 후보자. (b) 재검표가 대통령 선거인단에 투표된 경우에는 선거인이 서약한 대통령 후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 (c) 발의안이나 국민투표의 지지자 혹은 재검표 대상인 운영위원회가 투표에 부친 주민발의안, 주민투표 혹은 법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투표 주장을 제기하는 유권자.
  - (d) 모든 주의 사무소, 대통령 선거인단, 미국 하원, 상원 혹은 전국 전당대회 혹은 모든 주 법안에 대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재검표하는 경우 주 총무처장관.
15629. 재검표는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15630. 재검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유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표용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재검표의 일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검사하는 행위에는 선거공직자 및 특별 재검표 위원회를 감독하는 선거공직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취급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공직자나 특별 재검표를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이 투표를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는 한, 검사 중에는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공직자 또는 선거공직자, 특별검표위원회 위원 또는 상급법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직무대행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재검표 중에 투표용지를 만지거나 취급할 수 없습니다.
15631. 재검표 시에 다음 절차에 따라 투표용지의 불완전성, 모호성 혹은 기타 결함으로 인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a) 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권자는 이의 제기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b)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공직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당 투표를 집계한 이후에 집계 방법에 대한 표기와 함께 따로 보관해 주십시오.
- (c) 선거공직자는 재검표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이의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선거공직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15632. 공식적인 개표점검에서 보고된 바 대신 다른 후보자가 지명되고 선출되었거나, 다른 대통령 선거인단이 과반수 미만의 최다 득표수의 표를 받았거나, 혹은 하나의 법안이 무산되지 않고 승인되었거나 승인되지 않고 무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재검표가 완료되었다면, 영향을 받는 각 구역의 재검표 결과가 입력되어야 하며, 이후 해당 결과는 모든 목적상 재검표와 관련된 공직, 대통령 선거인 명부, 또는 법안의 공식적인 결과가 됩니다. 공직, 대통령 선거인 명부 혹은 법안이 주 전역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해당 공직 후보자에게 투표한 관할 구역 내 각각 모든 투표구의 투표 수를 계산하여 완료되지 않은 공직, 대통령 선거인 명부, 또는 법안과 관련된 재검표 결과는 무효입니다. 공직, 대통령 선거인 명부 혹은 법안이 주 전역에서 투표되는 경우, 해당 공직, 후보 혹은 법안에 대해 주 전역에서 실시된 각 투표가 재검표되지 않았다면 재검표 결과는 무효입니다.
15633. 본 장에 따라 실시된 재검표 결과에 대한 사본은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규집(CCR) 제 2 편 7 부 8.1 장 참조**

## 연방법

### 2002 년 미국 선거지원법

주요 조항: (1) 모든 유권자가 독립적으로 비공개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하기 이전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확인, 수정 및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투표 시스템 기준 및 자금을 제공하며; (2) 유권자가 적격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3) 처음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때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4) 군 및 해외 거주 유권자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며; (5) 유권자의 불만 제기를 용이하게 하며; 그리고 (6) 선거 과정을 감독하고 연구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984 년 노인 및 장애인 투표자 편의 시설법[42 USC 1973ee]은 일반적으로 투표소가 연방 선거를 위해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이를 요구합니다. 투표소의 역할을 수행할 접근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경우라면, 정치적 하부 구역은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정부가 원격타자기(TTY)라고도 알려진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 장치(TDD)를 통한 정보를 포함한 장애인 및 노인 유권자를 위한 등록 및 투표 보조 도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993 년 국가 선거등록법**

(흔히 부르는 명칭: 자동차 유권자법; NVRA.) 이 법의 목적은 모든 미국인이 더 쉽게 투표 등록을 하며 등록 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때, 일반 지원을 신청할 때,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지원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혹은 주에서 승인한 형식의 우편 양식을 사용할 때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은 선거 관리 위원이 최신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유권자에게 등록 상황을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1990 년 미국인 장애인법**

(흔히 부르는 명칭: 장애인보호법.) 장애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과 관계 혹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장애의 병력 혹은 기록을 가진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의 제 2 편에서는 주 및 지방 정부 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1965 투표권법**

언어 소수 그룹(LMG) §4(f)(4) 및 §203 을 참고해 주십시오. 해석과 지침은 연방 규정집 (99 년 7 월 1 일 버전, 제 28 편, 제 1 장, 파트 55, §§55.1-55.24)에 나와 있습니다. 소수 언어 조항이 1975 년에 이 법에 추가되었으며, 2002 년 7 월 인구조사국 통계 발표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는 §203(c)에 따라 본 법이 적용되는 관할권이 되었습니다 (67 연방 규정 144, 48871). 언어 조항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는 모든 종류의 선거에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및 스페인어로 이루어진 선거자료 및 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은 "투표용지를 포함하는 선거 절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 혹은 투표 통지, 양식, 지침, 지원 혹은 기타 자료 혹은 정보"로 정의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언어 소수 그룹(LMG) 구성원이 투표 관련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유권자 권리장전

1. 유효 등록 유권자(미국에 거주하며 연령이 18 세 이상 미국 시민 중에서 중범 유죄판결을 받아 주 혹은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및 법원에 의해 투표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현재 판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 경우 귀하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의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을 경우 임시 투표용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의 투표 마감 이전에 투표소 안에 있었거나 투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었으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의 위협을 받지 않고 기밀 투표용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의 투표를 완료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넣기 전 언제든지 훼손된 투표용지를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VBM 투표자 역시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 본인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선거공직자에게 반송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귀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없으면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의 기표한 VBM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 어떤 투표구로든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귀하의 유권자의 투표구에 다른 언어로 된 선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수의 주민이 거주한다면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귀하의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선거 절차에 대해 투표구 위원회와 선거 관리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얻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되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질문이 의무의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 관리 위원들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귀하의 불법 또는 부정행동을 지역 선거 관리원 또는 주 총무처 장관 사무실로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권리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 받았다고 여겨지거나 부정선거 또는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주 총무처 장관 기밀 무료 유권자 직통 전화 1-800-345-VOTE (8683)로 알려 주십시오.

선거 관리인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예: 투표소 위치, 투표용지에 표시될 안건 및 후보자)를 발송하기 위하여 귀하의 유권자 등록 선서진술서

상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표결법안위원회 혹은 각종 선거, 학계,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귀하의 유권자 등록 카드상 운전면허 및 사회 보장 번호 혹은 귀하의 서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해당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려는 경우 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긴급직통전화 1-800-345-VOTE (8683)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의 경우 유권자 등록 상태를 기밀로 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총무처 장관의 가정 안전(Secretary of State's Safe at Home) 프로그램 수신자 부담 전화 1-877-322-5227 로 문의하거나 [www.sos.ca.gov](http://www.sos.ca.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